



도 담 도 담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정의 및 처벌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불법 촬영물을 반포 등이란?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하는 행위

불법 촬영물 반포 등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 등을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 촬영물 반포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의 이해

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수입 또는 수출 → 무기징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10년 이하 징역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알선 → 3년 이상의 징역
-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 1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